


(성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참조6)

 성남시의회 Seongnam City Council	성남시의회
	제284회(임시회)

2023.07.17.(월)  
문화복지체육위원회실

# 조례(안) 등 검토보고서

## 《검토사항》

- 조례안 8건  
(제정 2건, 일부개정 6건)
- 민간위탁 동의안 7건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전문위원 염대석)

# 성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제안경위

- 제 출 자: 성남시장
- 의안번호: 제5183호

## 2. 제안이유

- 조례 근거 법령을 현행화하고 협의체 구성 당연직 위원의 소속과 직위 명확화 및 협의체 운영을 위한 예산 보조 지원 근거를 명시하여 조례의 법적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조례의 근거 법 현행화(안 제1조)
  -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2항 삭제 반영
- 당연직 위원의 명확화(안 제3조~6조)
  - 협의체 구성 당연직 위원의 소속, 직위의 구체적 명시
- 담당 업무 외의 조례 내용을 정리
  - 사회보장전담기구의 설치는 협의체 사무 영역 외 내용으로 삭제
  - 타 기관의 의견 청취를 의무가 아닌 협조 요청으로 변경

## 4. 참고자료

- 관계법령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 기 타
  - 입법예고(2023. 03. 20. ~ 04. 10.)
  - ※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성남시 자치법규 입법 사무에 관한 조례 제8조

- 의견내용: 광운부 (성남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위원장)  
제17조(의견의 청취) 심의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는 경우 대표협의체만  
의견 청취가 가능하므로 심의에 필요한 이라는 내용 삭제 요청  
☞ 검토결과: 심의에 필요 시 라는 단서조항을 필요한 경우로 변경(반영)

## 5. 검토 의견

### 가. 조례 개정의 취지 및 이유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성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근거 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2항 삭제(2017.10.24. 개정)에 따른 조례의 정비와 효율적인 협의체 구성 및 담당 업무 외의 조문 규정을 현행화 하는 등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 ▶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지역복지 증진을 위한 과정에 민간의 참여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참여복지를 구현하고 복지·보건·고용·주거·교육·문화·환경관련 서비스 제공자간의 연계망(network)구축을 통하여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사회보장급여 제공을 실현하고 지역사회 내 복지자원 발굴 및 서비스 제공 기관 간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 체계 확립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는 민·관 협력기구임.

### 나.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

- 안 제1조(목적)에서는 조례의 근거 법 정정
  -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조문 삭제 반영 (2017.10.24. 개정)
- 안 제3조~6조는 당연직 위원 현행화를 위해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운영을 효율화하고자 함.
  - 안 제3조(대표협의체)에는 위원 소속 부서 명시
    - 교육문화업무담당국장, 주민자치과장, 고용노동과장 추가
    - 3개 구 협의체 위원장을 당연직으로 위촉
  - 안 제4조(실무협의체)에는 구성 위원 직위 명시
    - 사회복지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문화·환경·경제·생활체육 등 관련 분야 팀장으로 명확화

- 안 제5조(실무분과)에는 공공위원 구성 범위 명시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세부사업 담당 팀장으로 개정
- 안 제6조(구 협의체)에는 당연직 위원 구성에 대한 내용 명시
  - 동 협의체 민간공동위원장을 당연직으로 위촉
- 안 제7조(동 협의체)는 동 주민센터의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정비
  - 지난 2016년도부터 추진된 복지부와 행자부의 읍면동 복지허브화 정책에 따라 전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의 명칭이 ‘행정복지센터’로 변경됨.
- 안 제17조(의견의 청취)는 각 협의체, 전문위원회 및 실무분과는 필요한 경우 타 기관의 의견 청취를 의무 조항이 아닌 협조 사항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안 제20조(협의체 운영지원)는 제2항을 신설하여 협의체 운영 활동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성남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 예산 보조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있음.
- 현행 조례 제21조(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1)에 의해 필요에 의해 설치된 사회보장 사무 전담기구는 협의체 사무영역 외 내용으로 조항을 삭제함.

#### 다. 종합검토 의견

-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맞춰 조례를 정비하고, 효율적인 지역사회 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협의체 등 일부 조항을 현행화 함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또한 그밖에 상위법 저촉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2조(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 ①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조직, 인력,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등을 마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보장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기구(이하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라 한다)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 관계 법령 발췌서

##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군·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자문한다.

1.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시·군·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시·군·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40조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 3. 21.>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제7항에 따른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공동위원장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된 공동위원장을 말한다)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⑤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군·구의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개정 2017. 3. 21.>

⑦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 단위로 읍·면·동의 사회보장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해당 읍·면·동에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신설 2017. 3. 21.>

⑧ 제7항에 따른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자치시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7. 3. 21.>